

서울남부지방법원 2024. 10. 17 선고 2024가단230095 판결 [사해행위취소]

## 전 문

원고A 주식회사

소송대리인 B

피고C

변론 종결 2024. 9. 26.

판결 선고 2024. 10. 17.

## 주 문

1. 피고와 소외 D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23. 2. 6. 체결된 증여계약을 5,375,308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.
2. 피고는 원고에게 5,375,308원과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날까지 연 5%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.
3.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.

N

## 청 구 취 지

주문1) 과 같다.

## 이 유

1. 청구의 표시 : 별지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.

## 2.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(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)

**판사조종래**

별지

1) 원고의 청구취지 제1항 기재 '매매계약'은 '증여계약'의, 제2항 기재 '연 12%'는 '연 5%'의 각 오기로 보인다.